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4. 30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4월 9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이병순)

가. 제안이유

○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영상 정보의 보관·삭제의 조례를 개정하여 유관부서·기 관 공무원 및 관제센터 운영 관계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유관부서·기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조항 개정(안 제1 4조제2항)
-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명확화(안 제18조제3항)
- 별지 서식 추가(안 별지 제1호서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영상 정보의 보관·삭제의 조례를 개정하여 유관부서·기 관 공무원 및 관제센터 운영 관계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4조제2항 단서에서는 유관 부서·기관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·방문 시에 공문을 지참하여 그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 후에 출입자 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"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" 특정한 영상정보에 한정하여 보관기간을 최대 90일 이내로 명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먼저 안 제14조제2항 단서 조항에서는 유관 부서·기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단서를 신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출입자 통제를 일부 완화하였는데.
- 이처럼 출입자 통제를 일부 완화하는 만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며,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더라도 내부 방침으로 '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문 목적'에 한하여 출입·방문을 허가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음은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대해 살펴보면,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영상정보의 기본적인 보관기간은 "최대 30일 이내"로 명시하였으며,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에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제3호에만 단서를 신설하여

"특정한 영상정보에 한하여 최대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였는데, 이는 제1호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, 제2호의 경우 수사 또는 재판에 영상제공 시점 등 보관기간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반면, 제3호의 "그 밖에 정당한 사유"는 조문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보관기간을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"특정 영상정보에 한하여" 보관기간을 일부 명확히 하고자 해당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보임.

-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 41조제1항 본문에는 "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관기간을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법 제4조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는 "개인정보에 대한 열람(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)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"가 있으므로,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내부방침을 세워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- 따라서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, 앞서 언급한 내부방침을 세워 안전조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,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면,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	안		관	련
번 :	호	제330호	번	호

제안연월일: 2024. 4. 26.

제 안 자: 전승관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○ 특정한 영상정보 보관을 최대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은 구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○ 안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 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 ①	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 ①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1.·2.·3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<단 서 신설>	3 	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유관부서 · 유관기관의 공무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그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한(통제)구역 출입자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행 혅

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 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 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개 아 정

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 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

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
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· 2. · 3. (생략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설치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330

제출연월일: 2024. 4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영상 정보의 보관·삭제의 조례를 개정하여 유관 부서·기관 공무원 및 관제센터 운영 관계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유관부서·기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조항 개정(안 제14조제2항)
- 나.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명확화(안 제18조제3항)
- 다. 별지 서식 추가(안 별지 제1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2) 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3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3.7.~3. 27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-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유관부서 · 유관기관의 공무원이 공문을 지참하여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그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한(통제)구역 출입자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8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정한 영상정보에 한정하여 최대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다.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한(통제)구역 출입자 명부

연 번	소속	성 명 생년월일 문서번호 출 입 일 시 확인지 (아내지			확인자 (안내자)			
번	工士	8 8	8022	· 문시인오	월일	시분	까지	(안내자)
1					/	0	0	
2					/			
3					/			
4					/	0	0	
5					/	0	0	
6					/	0	0	
7					/	0	0	
8					/	0	•	
9					/		0	
10					/	0	•	
11					/	0	•	
12					/	0	•	
13					/	•	•	
14					/	0		
15					/	•		
16					/	•		
17					/	•	•	
18					/	•		
19					/	•	•	
20					/	•	•	
21					/	0 0	•	
22					/	0	0	
23					/	0	0	
24					/	0	0	
25					/	0	0	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출입자 통제 등) ① (생	제14조(출입자 통제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	②
터를 출입·방문하려는 사람은	
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	
다. <단서 신설>	다만, 유관부서 유관기관
	의 공무원이 공문을 기참하여
	방문하였을 경우에는 그 신분과
	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에 별지
	제1호셔식의 제한(통제)구역 출
	입자 명부를 기재하는 것으로
	갈음할 수 있다.
③・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	제18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
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	①
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	
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	
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예외로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	3
경우 <단서 신설>	다만, 특정한 영상정보에
	한정하여 최대 90일 이내로
	보관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